
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
일부개정법률안
(김준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79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2.

발 의 자 : 김준혁 · 김대식 · 김준형
박정현 · 박희승 · 염태영
이수진 · 이연희 · 정을호
정준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교육감으로 하여금 원활한 교육활동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정신건강 상담·검사·진료비용 지원 등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실시를 의무화한 것이 아니라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정신건강증진사업의 실시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시·도교육청별로 사업 실시 여부와 수준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고, 사업의 지원범위가 협소하여 복직 지원이나 장시간 근무 등 정신건강 위해요인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등이 미비한 실정임.

이에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실시를 의무화하고, 복직 지원 등을 사업의 지원범위에 포함시키며, 일부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으로 교육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29조의2 및 제34조).
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”를 “실시하여야”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를 제7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“의료기관에”를 “의료기관 또는 전문상담기관에”로 하며, 같은 항 후단 중 “의료기관에”를 “의료기관 또는 전문상담기관에”로, “할 수 있다”를 “하여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의료기관과”를 “기관과”로, “구축할 수 있다”를 “구축하여야 한다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병가·휴직 후 복직 지원

6. 장시간 근무, 과중한 업무 및 지속적인 학부모 민원 등 정신건강
위해요인 개선 조치

④ 교육감은 매년 교원의 정신건강 실태를 조사하고, 그 조사 결과를 분석·평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⑤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사유로 승진·근무성적평정·전보 등에 있어 부당한 대우 또

는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⑥ 누구든지 정신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34조제2호를 제4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제29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대우 또는 불이익한 조치를 한 사람

3. 제29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한 사람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9조의2(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실시) ① 교육감은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(이하 이 조에서 “정신건강증진사업”이라 한다)을 <u>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</u> 한다.	제29조의2(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실시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실시하여야</u> ----- -.
1. ~ 4. (생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5. 병가·휴직 후 복직 지원
<u><신설></u>	6. 장시간 근무, 과중한 업무 및 <u>지속적인 학부모 민원 등 정신건강 위해요인 개선 조치</u>
5. (생략)	7. (현행 제5호와 같음)
② 교육감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<u>의료기관에</u>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교육감은 위탁받은 <u>의료기관에</u> 대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<u>할 수 있다</u> .	② ----- ----- ----- <u>의료기관 또는 전문상담기관에</u> ----- --- <u>의료기관 또는 전문상담기관에</u> ----- ----- <u>하여야 한다</u> .
③ 교육감은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<u>의료기관과</u> 협약을 체결하는 등	③ ----- ----- <u>기관과</u> -----

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제34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(생략)

<신 설>

<신 설>

-----구축하여야 한다.

④ 교육감은 매년 교원의 정신 건강 실태를 조사하고, 그 조사 결과를 분석·평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⑤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정신 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사유로 승진·근무성적평정·전보 등에 있어 부당한 대우 또는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⑥ 누구든지 정신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34조(벌칙)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제29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대우 또는 불이익한 조치를 한 사람

3. 제29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

2. (생 략)	<u>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한 사람</u> 4. (현행 제2호와 같음)
-----------------	---